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398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398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80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소2980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20. 10. 15.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8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주심대법관이흥구